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7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관련조문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

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를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를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 ①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3.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구민의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3.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 ----- ----- -----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
--	--------------------------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 ----- -----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9조 ----- ----- -----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매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공동상표인 트리즘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 -----.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 ----- ----- -----.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제1조(목적) ----- ----- ----- -----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2. ~ 5. (생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 ----- 2. ~ 5. (현행과 같음)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생략)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2022.1.13.시행)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

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고 영 룡